

차별대우의 접근

중요한 정보 수집

최 우선적인 단계는 차별 금지법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듯이 이 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미 당뇨병 협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및 기타 자원제공처에 문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고용주에게서 받은 서신등, 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보관하십시오. 해당관련 일반 문서의 사본을 수집해야 합니다 (인사정책등). 이름과 일자를 포함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및 협상

당뇨병에 기초한 차별대우는 종종 무지의 결과로 인합니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의 경우 그 본질과 치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문제는 의료적 필요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차별 금지법 조항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또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소송

때로는 차별대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취합니다. 올바른 정부 기관에 차별 혐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기업이거나 주정부 또는 해당지역 정부인 경우,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나 또는 주정부의 차별 금지 기관이든 이곳에 혐의를 제기하십시오. (연방정부든 아니면 주정부 기관에든 혐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는 이 두곳 모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됨) 고용주가 연방정부인 경우, 차별대우가 발생한 지역의 내부 동등 고용 기회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조치를 취하는 경우 종종 짧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 만족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를 기초로한 차별 배상 청구를 위해 연방정부 법정이나 주정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

미국 당뇨병 협회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법과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예가 2008년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인데 이는 당뇨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사람이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 입증이 훨씬 수월하게 해주며 법으로 보호받게 해 줍니다.

ADA 자원

ADA에서는 고용시에 직면하는 차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ADA의 고용 차별이나 차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 패킷은 1-800 DIABETES (342-2383) 로 문의하십시오.

당뇨병에 대한 일반 정보는
1-800 DIABETES (342-2383)
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diabetes.org로 방문하십시오.

책자나 카달로그의 주문은
1-800-ADA-ORDER (232-6733)
로 문의 하십시오.

가입 및 회원권에 대한 질문은
1-800-806-7801
로 문의하십시오.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 Inc. :
510-644-2555; www.dredf.org

National Employment Lawyers Association:
415-296-7629; www.nela.org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1-800-669-4000; www.eeoc.gov

U.S. Department of Justice:
1-800-514-0301; www.ada.gov

U.S. Department of Labor:
1-866-487-9243; www.dol.gov/elaws/fmla.htm



본인의 직업 및 권리

직장에서 당뇨병을
근거로한 차별대우 싸움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직장에서 차별대우에 직면합니다. 아래 정보는 당뇨병을 가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줍니다.

법률

연방 정부 차별 금지법



몇몇 연방정부법은 장애를 기초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민간 고용주나, 노동 조합, 및 15명 이상의 고용인을 거느리는 고용기관 및 주정부 및 현지 정부기관에 적용됩니다. 1973년의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행정각부에서 일하는 고용인이나, 또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고용주의 경우에 적용되며, 그리고 의회 책임 법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은 의회 직원 및 대부분의 입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연방정부 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반드시 그들이 “장애를 가진 자격있는 개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번째 단계는 장애자라는 “기록”이 있는 장애자라는 사실과, 또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장애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이러한 법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한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즉 먹기, 걷기, 보기 또는 자신을 돌보거나 내분비 기능과 같은 주요 몸의 기능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뇨를 가진 사람이 인슐린과 같은 완화 조치의 도움이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직업에서 일체의 편의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만 단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생활 활동의 실질적 제약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근로자는 또한 그들 당사자의 직업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근로자는 직책을 원하거나 직책을 유지하는 직업과 관련된 기타 요건을 비롯한 능력, 경험, 교육에 만족해 하는 사람이며,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경우 -- 그 직책에서 중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편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직업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일체의 변경이나 조정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차별 사례에서 흔히 있는 문제는 당뇨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직원에게 안전상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고용주의 주장입니다. 종종 당뇨를 가진 근로자는 당뇨병에 대한 신화나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로자가 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정이나 고용주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 정부 차별 금지법

모든 주 정부는 자체적인 차별 금지법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이러한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일부 주정부의 차별 금지법의 경우 연방정부법 보다 더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

비록 이 정보의 초점이 차별 금지법에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법이 당뇨병을 가진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병가법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은 근로자나 친족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인해 50명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사기업과 대부분의 공공 기업주에게 매년 최고 12주에 해당하는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가는 혈당수치 관리나 의사와의 예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걸친 문제등을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권리 및 책임

차별 금지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개인의 장애로 인한 일체의 악한 고용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고용, 해고, 징계, 지불, 진급, 직업 교육, 복리후생 혜택이나 또는 고용에 대한 일체의 약관에 있어서 차별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해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흔히 고용주에게 자신이 당뇨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고용주가 장애를 알고 있는는 경우 차별 금지법만이 차별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

편의도모

고용주는 장애를 가진 직원에 의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도모”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편의도모가 고용주에게 있어서 “과도한 부담” 즉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사람들의 편의도모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편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혈당 수치 점검이나, 스낵을 먹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잠깐의 휴식시간.
- 가까이에 당뇨관련 용품 및 음식을 놓아둘 능력
- 변경된 일정으로 근무할 기회나 교대 근무에 반하는 일반 정규근무로 일할 기회

